



제2부 부문별 행정



제4편 주민복지국 _ 제3장 생활보장과

제1절 _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제2절 _ 자활사업 및 의료급여

제3절 _ 희망복지행정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I. 사업개요

1. 법 제정추진 경과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 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99. 9. 7 제정,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2. 제정 의의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 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 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욕구에 따라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유지를 위해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보충적 지원이다. 이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원할 수 있으며, 조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조건 불이행 시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음.

4. 주요내용

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차등화를 통한 욕구별 맞춤형 급여 지원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범위 확대

나. 자활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

- 근로능력자에 대하여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방지

-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체계적 자활지원

5. 기초생활보장 업무 처리절차

가. 신청

- 신청권자 : 보호대상자, 친족 및 관계인, 복지담당공무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복지급여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소득·재산관계서류 등

나. 조사

- 조사대상 : 보장가구원, 부양의무자 가구원
- 조사내용
 - 신청인의 복지욕구와 관련된 사항 및 신청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 등
- 조사방법 :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적용 및 가정방문 현장조사

다. 보장결정

- 보장의 단위 : 가구를 단위로 보장하되 특히 필요시 개인단위 보장
- 결정·통지 :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장여부 결정 후 서면통지
- 2016년 기초생활수급자 조사현황 (단위 : 세대)

계	적합	부적합	보호중지	비고
4,747	2,233	1,476	1,038	

라. 변동·사후관리

- (변동관리) : 정보시스템에 의한 소득재산, 인적사항 등 변동사항 정비
- (사후관리) : 부정·중복수급 예방 및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

II. 2016년 사업현황 및 실적

1.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실적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지원금액(천원)	비 고
국고보조사업			24,991,310	
구 분	생계급여	5,436 가구	22,881,031	생계급여수급자
	주거급여	5,377 가구	5,756,396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	2,650 명	45,016	초중고 교육급여수급자
	해산·장제급여	133 명	167,171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정부양곡	2,108 가구	335,624	수급자, 차상위
	월동대책비	411 가구	20,950	수급자, 차상위
	교육장려금	640 명	147,307	수급자, 차상위 자녀

2.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시설제외)

(단위 : 명)

구 분	총수급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자	
			소 계		소 계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합 계	6,303	8,975	6,117	8,684	186	291
서 1 동	535	759	524	739	11	20
서 2 동	493	692	482	675	11	17
서 3 동	538	754	526	738	12	16
금 사 동	373	539	365	529	8	10
부곡1동	668	942	644	907	24	35
부곡2동	328	473	313	449	15	24
부곡3동	225	303	214	288	11	15
부곡4동	432	575	424	565	8	10
장전1동	253	361	245	349	8	12
장전2동	225	273	218	262	7	11
장전3동	207	279	199	268	8	11
선두구동	108	131	106	129	2	2
청룡노포동	229	356	220	340	9	16
남 산 동	988	1,488	955	1,425	33	63
구서1동	234	353	225	339	9	14
구서2동	439	665	431	652	8	13
금 성 동	28	32	26	30	2	2

3.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 근로능력여부 및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 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법 제6조)
- 재산의 소득 환산율

구분 \ 종류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주거재산 제외)	금융재산	승용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 의무자	월 1.04%	월 4.17%		

나. 2016년 급여별 선정기준 (월/천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	471	802	1,037	1,273	1,509	1,744	1,980
의료급여	649	1,106	1,431	1,756	2,081	2,406	2,731
주거급여	698	1,189	1,538	1,888	2,237	2,586	2,936
교육급여	812	1,383	1,789	2,195	2,601	3,008	3,414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 지원 내용 >

구분	내용
생계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가구별 선정기준 차액을 각종 급여로 지원하는 보충급여제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주거급여 (현금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지급 -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임차급여 차등지급 - 자가 가구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지급
교육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 교과서대 연1회 131.3천원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연 53.3천원(연2회 분할 지급) ❖ 초·중학생 부교재비 연1회 39.2천원
해산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 가구의 출산여성 1명당 600천원(쌍둥이 600천원 추가)
장제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1구당 750천원

제2절 자활사업 및 의료급여

I. 자활사업

2000.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며, 자활사업의 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뿐만 아니라 특례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자활사업 참여를 확대하였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근로무능력자는 본인 희망자에 한해 참여 가능)로서, 근로능력이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가해야 생계급여 지급이 가능함.

1. 대상자



- 의무참여 : ①, 희망참여 : ②~⑥ - 수급자 : ①②③ - 참여우선순위 : ① → ② → ③④⑤⑥

2. 자활사업참여자 배치 및 인건비 지급

가. 자활사업참여자 배치 기준 :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우선의뢰

자활사업종류	실시기관구분	기준	판정 대상자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고용센터	❖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자	집중취업지원 대상자 (70점 이상)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 자활근로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 자	근로능력강화 대상자 (45~69점)
		❖ 일용·임시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 자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 ❖ 간병·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만 참여 가능한 자

나. 자활사업참여자 인건비 지급 기준

(원/인·일)

구분	시장진입형/ 기술자격자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기술·자격자	근로 유지형
		복지·자활도우미 인턴형	사회복지시설 도우미형		
지급액 계	39,010/ 41,010	39,010	35,300	35,300/ 37,300	26,320
급여단가	36,010/ 38,010	36,010	32,300	32,300/ 34,300	23,320
실비	3,000	3,000	3,000	3,000	3,000
표준소득액 (월)	936,260	936,260	839,800	839,800	606,320
비고	1일 8시간, 주5일				1일5시간, 주5일

3. 2016년도 추진 성과

가. 보건복지부 2016년 전국 자활분야 평가 『우수』 지자체 장관 표창

나. 보건복지부 2016년 전국 지역자활센터 평가 『우수』기관 선정

▶인센티브 예산 8,000천원 획득

다. 자활기업 진출 1개, 신규 사업장 6개 발굴로 35명 일자리 창출

라. 자활기금 조례개정 후 자활사업단 기금 2회 8,897만원 지원

▶자활사업단 임차보증금 7,000만원, 금정북카페 초기비용 1,897만원

마. 자활 참여자 역량강화 및 직무교육 실시

▶17회 719명

바. 전체 자활참여자 대비 자활성공률 : 45% (201명/442명)

4. 2017년도 자활사업 추진 계획

(단위 : 명/천원)

사업 유형	실시 기관	사업명	사업내용	변동	인원	예산액(천원)			비고
						계	인건비	사업비	
자활기업(4), 자활근로사업단(22), 고용노동부(1) ▶ 총27개 사업					354	2,444,455	2,046,022	398,433	
자활 기업	소계(4개사업단)				19	35,685	35,685	0	
	부산시광역시활센터	희망을만드는교실	장애아동통합교육보조	기존	5	0	-	-	
	금정구지역 자활센터	척척박사	전문청소용역	기존	3	0	-	-	
		명진클린	전문청소용역	기존	9	29,738	29,738	-	
	카페휴부산대점	디저트카페전문점	기존	2	5,947	5,947	-		
시장 진입형	소계(9개사업단)				69	1,164,144	878,730	285,414	
	금정구지역 자활센터	드림셋(버섯) 사업	금융취약계층시범사업	기존	5	95,675	67,050	28,625	
		드림셋(세탁) 사업	금융취약계층시범사업	기존	5	93,975	65,950	28,025	
		로바니아	샌드위치 제조 판매	기존	3	57,585	37,800	19,785	
		사서도우미	도서관사서도우미	기존	8	103,570	99,870	3,700	
		에스클린	전문청소용역	기존	25	372,375	317,580	54,795	
		카페휴2(구청점)	테이크아웃커피전문점	기존	3	88,569	38,730	49,839	
		119 푸드사업	구내식당 및 커피전문점	기존	6	105,970	75,090	30,880	
		카페휴3(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카페	상위진입	4	115,280	52,000	63,280	
드림나누미	사회복지시설 인력파견 사업	신규	10	131,145	124,660	6,485			
인턴도 우미형	소계(2개사업단)				13	135,291	135,106	185	
	금정구지역 자활센터	자활도우미	지역자활센터업무보조	기존	1	12,545	12,360	185	
	구직영	복지업무도우미	동 사회복지업무보조	기존	12	122,746	122,746		
사회 서비스형	소계(8개사업단)				67	831,090	727,036	104,054	
	금정구지역 자활센터	금정북카페	커피전문점	기존	5	81,615	57,460	24,155	
		다리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기존	4	73,542	46,400	27,142	
		드림올타리	봉제사업(실밥뜯기 등)	기존	11	131,045	125,170	5,875	
		드림이음	전자제품 부품조립	기존	6	72,200	67,950	4,250	
		드림택배	정부 양곡배송사업	기존	7	111,877	82,920	28,957	
		드림플러스	가내수공업(부품조립 등)	신규	11	139,105	125,430	13,675	
	구직영	수목가꾸기사업(공익형)	수목 및 화훼정리	기존	20	192,788	192,788		
도서관도우미(공익형)		도서관업무보조	기존	3	28,918	28,918			
Gate Way형	소계(1개사업단)				8	78,242	69,462	8,780	
	금정구지역 자활센터	Gate-Way	자활참여자 초기과정	기존	8	0	69,462	8,780	
근로 유지형	소계(2개사업단)				28	200,003	200,003	0	
	구직영	동복지지원	인부확인 및 동주민센터환경정비	기존	18	128,573	128,573		
시설관리지원		시설환경정비 관리	기존	10	71,430	71,430			
취업프로 그램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150	0	-	-	

II. 의료급여

1.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종, 2종으로 구분되며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

종 별	대 상
1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세대, ❖ 사회복지 시설 입소자, 행려환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5.18광주민중항쟁 관련자, 중요무형문화재, 이재민 및 의사자, 의사자의 유족
2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구성된 세대

〈 의료급여현황 〉

(2016. 12. 31.기준)

동 별	합 계		1종		2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명
합 계	5,753	8,829	4,631	6,206	1,122	2,623
서1동	491	686	400	489	91	197
서2동	435	620	336	405	99	215
서3동	474	657	395	469	79	188
금사동	328	463	266	311	62	152
부곡1동	575	831	484	598	91	233
부곡2동	268	380	224	267	44	113
부곡3동	178	245	143	166	35	79
부곡4동	380	515	319	374	61	141
장전1동	218	311	145	171	73	140
장전2동	208	248	181	192	27	56
장전3동	221	297	182	207	39	90
남산동	857	1278	630	732	227	546
구서1동	188	289	148	191	40	98
구서2동	360	552	261	304	99	248
금성동	28	36	24	29	4	7
선두구동	113	136	104	117	9	19
청룡노포동	195	291	153	190	42	101
복지시설 및 행려자 등	236	994	236	994	-	-

2. 의료급여의 내용

수급권자의 진찰,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치료 재료, 의료급여기관에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등의 의료급여를 받는다.

가. 의료급여의 범위에 제외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 특진 보조기, 의치, 의한, 각종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및 제3자의 고의, 과실 행위로 인한 진료
- 자동차 손해보상보험법, 민법 등에 의하여 가해자가 진료보상이 가능한 경우

〈 의료급여 본인일부 부담금 조건표 〉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종별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일 반	장애인
1차 의료급여	의원	원내직접조제	1,500원	1,500원	750원	
		그 외의 경우	1,000원	1,000원	250원	
	보건기관	처방조제	무료	무료	무료	
		처방조제				
	약국	직접조제	900원	900원	최동	
		보건기관 처방조제	무료	무료		
처방조제		500원	500원			
2차 의료급여	제2차 의료급여기관 (외래)		그 외의 경우	1,500원	총진료비의 15%	무료(장애인 의료비에서 부담)
			원내직접조제	2,000원		
	제3차 의료급여기관 (외래)		그 외의 경우	2,000원	총 진료비의 15%	무료(장애인 의료비에서 부담)
			원내직접조제	2,500원		
입원(제1,2,3차 의료급여기관)			무료	총 진료비의 10%	무료(장애인 의료비에서 부담)	

※ 그 이외의 경우 : 원외처방전 발행이 있는 경우, 원내직접조제와 원외처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원내 또는 원외로 의약품 처방 없이 진료를 실시한 경우

제3절 희망복지행정

I.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 사업개요

가. 의의 및 특성

-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
-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새로운 차별화된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기존 방식	새로운 방식
① 공급자 지원	① 수요자 지원(바우처 방식)
② 단일한 제공기관	② 복수의 제공기관
③ 중앙정부의 직접 가격 결정	③ 시장, 경쟁을 통한 가격 결정
④ 중앙집중식·하향식	④ 지방분권식·상향식
⑤ 소규모 기관별 지원	⑤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업화



나. 사업목적

-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 (mass-customized service)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인적자본 형성, 건강투자, 고령 근로 촉진 등 사회 투자적 성격의 사업을 집중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 확충

2. 2016년 사업현황 및 실적

가. 사업현황

- 동화야 놀자(스토리텔링) 등 12개 사업

나. 예산액 : 1,504,348천원 ▷ 국비 1,053,043 시비 300,870 구비 150,435천원

다. 사업내용

- 동화야 놀자(스토리텔링), 해양역사문화체험아카데미,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 아동정서발달지원 서비스, 뇌에 기가 팍팍,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자녀의 성공을 돕는 부모코칭(키울 Mom 난다!), 내 나이가 어때서(어르신 건강지원서비스), 또다른 만남 (치매가족지원서비스)

라. 이용 및 지원 실적

- 서비스 이용 : 총 2,423건
- 지원 실적 : 1,407,711천원 ▷ 국비 985,398 시비 281,542 구비 140,771천원

II. 긴급지원제도 실시

1. 긴급지원제도

기본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임

2. 지원 대상 : 갑작스런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자

- 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라.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마.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하게 된 경우
-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이혼, 단전 등)

3. 지원요청 또는 신고자

- 가. 요청자 :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자
- 나. 요청처 : 구청 긴급지원담당(☎519-4785) / 보건복지콜센터(129)

4. 지원기준

- 가. 재산 : 13,500만원이하, 금융재산 500만원이하

나. 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 / 월	1,218,623	2,074,953	2,684,264	3,293,576	3,902,888	4,512,199

5. 지원원칙

- 가. 선지원 후처리, 단기지원, 타 법률 지원 우선, 가구단위지원 원칙 등
- 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 감당 곤란한 경우 의료 지원

6. 긴급지원 기간 및 내용

가. 단기지원원칙 : 사·군구청장에 의한 지원

- 원칙(선지원) : 1개월
- 연 장 지 원 : 2개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한 추가 지원 - 생계 및 연료비 3개월, 의료 및 교육지원 1회, 주거지원 9개월)

나. 지원내용

(단위 : 천원)

지원종류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지원기간	3개월	1회	1개월	1개월	1개월
지원금액	1인 418~ 6인 1,549	300만원 이내	1인 374~ 6인 820	1인 517~ 6인 1,920	· 초·중·고생 교육비 · 연료비 : 92(동절기10~3월) · 해산비 : 600 · 장제비 : 750 · 단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 500

다. 2016년 지원 실적

- 1,394건 (생계806/의료203/주거36/교육3/연료343/장제0/해산3)
- 지원금액 : 827,030,410원

Ⅲ. 아름다운 순회봉사단 운영

소외계층 주민에 대한 현장중심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분야별 전문직 자원봉사로 금정「아름다운 순회봉사단」을 조직·구성하여 2000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관내 저소득 주민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1. 봉사단 : 10개 분야 약 100명(전문가 50명, 자원봉사자 50명)
 - ▷ 한방·내외과 등 의료분야, 시력검진, 이용·미용, 장수사진촬영, 예쁜손가꾸기, 건강체험, 복지상담, 무료급식
2. 수혜대상 : 금정구 지역 내 저소득 주민 및 어르신
3. 최초구성 : 2000. 6. 11.
4. 운영일시 : 상·하반기 각 1회
5. 지금까지 추진실적

연도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운영회수	1회	2회	2회	1회	2회	2회	2회	2회	2회	2회	2회
봉사인원	75명	193명	156명	61명	149명	160명	156명	158명	174명	210명	239명
수혜인원	637명	1,943명	1,062명	820명	1,462명	883명	1,856명	1,679명	2,036명	1,942명	2,692명

IV. 이웃돕기 성금 모금

1. 모금기간 : 2016. 11. 21. ~ 2017. 1. 31.
2. 희망 2017 이웃돕기 모금실적

(단위 : 천원)

모금목표액	총모금액	성금			성품
		계	일반성금	지정성금	
270,211	501,319	252,882	141,665	111,217	248,437

※ 2016년 모금액 483,921천원